

# 공정위, 삼척LNG 공사 입찰담합 제재 착수

낙찰금액 1조3700억 규모  
13개 업체 과징금 5000억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대형 국책사업인 삼척 LNG 생산기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의 업체에 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이어 지난 1월 담합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데 이어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 LNG 생산기지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 부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기지로, 1조3739억원을 투자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생산기지 1단계가 준공됐다.

공사 입찰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개 공구로 나눠 진행됐으며 업체들은 2005년 1단계 5개 공구(대림산업 컨소시엄), 2007년 2단계 4개 공구(두산중공업 컨소시엄), 2009년 3단계 4개 공구(현대건설 컨소시엄) 등 총 3차례에 걸쳐 입찰 전에 모임을 갖고, 단계별로 입찰가와 낙찰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 LNG 낙찰 금액이 1조3700억원 규모라는 점에서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은 최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 원주시 45개 신규 핵심사업 추진

내년 국비확보 대책 보고회  
총 1조6000억 대규모 사업

원주시가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45개 신규 및 핵심 사업 추진에 나선다.

원주시는 22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백종수 부시장 주재로 '2017년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핵심 사업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제시된 신규 및 핵심 사업은 금대·신림지역 관광활성화, 보훈요양원 건립, 단계전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지돌 강변저류지 조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원주교도소 및 1군지사

이전 등 총 45건으로 모두 1조6258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원주시는 이날 이들 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업무를 공유한데 이어 각 사업 단계별로 국비 확보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지휘부 중앙부처 방문 및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에 적극 나서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보고회를 각 정부 부처 예산이 취합되는 5월과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에 각각 개최해 상황에 맞는 국비 확보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예정가격 산정범위 높여 '공사비 부담삭감' 없앤다더니

# 기준점 낮춰버린 '발주처의 꼼수'

LH·철도공단 등 발주기관  
복수예가 운영 개선했지만  
'설계가격' 한차례 삭감한  
'기초금액'으로 기준 바꿔

발주기관의 대표적 불공정관행인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비를 부담 삭감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도교통부가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적절한 운용을 지시했지만, 일부 발주기관이 이를 '꼼수'로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도교통부는 지난해 9월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불공정관행 가운데 하나로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비를 부담 삭감하는 행태를 지목했다.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설계가격(조달청의 경우 기초금액)을 산정한 후 이 가격의  $\pm 2\sim\pm 3\%$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뽑는다. 이어 복수예비가격 가운데 추첨으로 가장 많이 뽑힌 4개 값의 평균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이는 입찰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발주기관은 설계가격의  $\pm 2\sim\pm 3\%$  범위가 아닌 0~



서울 내부순환로 폐쇄... 우회로 정체 정릉천 고가교에서 시설물 파손이 발견돼 내부순환로 사근램프~길음램프 양 방향이 전면 폐쇄된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로 길음IC에서 월곡IC 구간 우회로인 중암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관련기사 14면

-6%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해왔다. 이른바 마이너스 복수예가로, 예정가격을 낮춰 입찰단계에서 공사비를 삭감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사비를 3% 정도 삭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설계가격 100억원짜리 공사가 평균적으로 97억원 선에서 발주되는 셈이다.

국도부는 이를 불공정거래로 지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설계가격의  $\pm 2\sim\pm 3\%$  범위에서 복수예가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후 도로공사의 경우 설계가격

의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가를 사정하고 있다.

LH와 철도공단은 각각  $\pm 2\%$ 와  $\pm 2.5\%$ 의 복수예가 사정률을 새로 정했다. 그런데 LH와 철도공단의 조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국도부가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설계가격'이 아니라 '기초금액'으로 복수예가를 뽑는 기준을 바꿔 시행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기초금액은 설계가격을 한 차례 삭감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복수예가 산정

범위를 상향 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준점이 되는 금액을 낮춘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LH는 올해부터 입찰공고문에 예정가격 결정방법으로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고 하면서 기초금액은 설계가격의 99% 수준에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는 기초금액을 설계가의 98% 수준에서 산정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김정석기자jskim@ ▶2면에 계속

법원, 구두계약 후 발뻘하는 발주처에 "이자까지 물어줘라"

## 설계변경 서면증거 없어도 '추가공사비' 지급 첫 판결

#K사와 서울시 S구는 '00대로 하수암거 확충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시작 후 S구는 안전문제를 들어 K사에 작업시간을 반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공사 효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K사는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발주처는 공사비를 추가로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자 서면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주지 않았다. 소송에서 법원은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3면

법원이 추가공사비 지급 소송에서 건설현장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계약서 등 서면 증거

가 없는데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추가공사비를 인정해준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지난해 말 경기도 소재 K사가 서울특별시 S구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S구)는 원고(K사)에게 12억7000만원(추가공사비)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처가 줘야 할 돈은 총 22억7000만원이다.

이 판결은 설계변경이 없었는데도 법원이 구체적인 건설공사 현실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설계변경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윤석기자 ysys@

# “작업시간 단축으로 공사비 증가”… 기술적부분 반영

〈인원·장비 추가 투입〉

‘이의제기 금지합의서’도 발주처가 일방적 작성 법원, 증거로 인정 안해

발주처-시공사 합리적 협업 문화 조성 기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도중 수 많은 변수가 발생한다. 이는 대부분 공사비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장은 바쁘다. 변수가 생길 때마다 추가공사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설계변경계약’을 하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공공 발주처는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고, 시공사 역시 ‘올의 위치에서 서류를 남기자고 끝까지 요구하기 어렵다.

K사가 서울시 S구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 소송’ 사건 역시 설계 변경은 없었고, 추가공사비에 대한 서면약속도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설계변경의 의미를 넓게 해석했다. S구의 요구로 공사시간이 단축된 만큼 공사에 투입한 인원·장비가 늘어난 건 설계변경이고,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K사 측 변론을 맡은 전선에 법무법인 로 벌 변호사대표 변호사 손수일은 “발주처가 구두도 추가공사를 지시한 게 설계변경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는 이제껏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외라고 말했다. 원조계 관계자들 역시 작업시간 단축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건설현장’의

세밀하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법원이 고려해 설계변경으로 인정한 사례는 찾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변호사는 “그동안 설계변경 구두약정을 인정한 판례가 드물게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계약자(갑리원)의 증언 등 다른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이처럼 법원이 구두증거를 받아들이고 설계변경을 인정한 사례는 특이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작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할증률도 200%를 인정했다. 발주처가 애초 적용하려던 할증률은 25%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많은 교통량 때문에 당일굴착 당일 복구를 하다 보니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해 200%의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할증률이란 공사 자재의 운반, 시공 중 발생하는 손실량을 보충하기 위해 정해놓는 기준이다.

이의제기 금지 합의서 같은 실질 증거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대해 “피고(S구)가 일방적, 일률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며 K사가 추가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기술적 부분을 들여다보고 할증률을 제시한 것으로, ‘불공정 합의서’ 같은 건설현장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 반갑다”면서도 “다중요한 건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가 원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협업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기기자 ysjs@

발주처 갑질… 법적 대응력 약한 중소사 무방비

## 구두약속 해놓고 재판가면 등돌리기 일쑤 무조건 공문발송… 모든 걸 문서로 남겨야

지방 중소건설사 소속 현장소장 A씨는 3년 전 공공 발주처 담당자 B씨에게 삼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공사기간 내내 협동하면서 지나다가 B씨가 준 공 후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때가 되자 180도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A씨는 주차장 비담공사를 하던 중 부지가 너무 평평한 것을 발견했고 “현재 설계대로 하면 물이 잘 안 빠질 것”이라고 B씨에게 전화를 했다. B씨는 “경사를 잡는 쪽으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대답했다. 구두상 설계변경 지시였다. 총 5억원 공사비 중 4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그러나 준공 후 B씨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A씨는 답답했다. 하지만 B씨가 설계변경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심지가 B씨는 원래 도면대로 현장을 일삼복구하려고까지 했다. 본인이 설계

변경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다. 해당 건설사는 추가공사비를 받기는커녕 원상복구 비용과 소송비까지 부담해야 했다. 그 후로 A씨는 공공공사를 할 때 모든 논의를 ‘공문 발송’으로 한다. 여의치 않으면 녹취라도 한다.

법무인력을 따로 갖춘 대기업이 아닌 대다수 중소 건설사들은 발주처의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소송 자체가 번거롭고 또 대상이 ‘갑’인 발주처다 보니 공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싸움에 대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 때문에 발주처와 건설사 담당자들 사이에 문서를 꾸미는 문화가 쉽게 정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추가공사비 지급과 관련해 발주처의 말 바꾸기를 경험한 건설사들은 ‘무조건

문서화’를 강조한다.

최근 서울시 S구와 ‘○○대로 하수암거 확충 공사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K사도 최소한의 서면 증거가 있었던 점이 승소에 도움이 됐다. 법원이 K사가 질박한 심정으로 보낸 수차례의 공사비 증액요청 ‘공문’을 보고 “기존 공사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중소건설사 영업 담당 K씨는 “설계변경은 예산증가로 이어지는데, 그 증가액이 공사비의 10% 이상이면 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고 설계회사도 감정을 받는다. 공무원이 문서화에 거부감을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실제 피해를 보는 건 건설사다. 번거롭더라도 문서화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말했다.

윤석기기자

### 1면서 계속 =예정가격 산정범위 높여 ‘공사비 부담’없던 터니

LH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 등 공사비를 대폭 삭감하는 곳에 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해 97%선에서 올해는 98%, 내년부터는 99%로 여전히 허락하는 선에서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99%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수예가제도에서는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선에서 복수예가가 뽑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은 마이너스 복수예가 산정 관행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는 시늉이라도 내고 있지만, 다른 공기업은 감감무소식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여전히 각각 0~8%, 0~5% 범위에서 복수예가가격을 뽑고 있다. 이는 약 4%, 2.5%의 공사비를 입찰단계에서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방부의 경우 ±3%에서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 0~3%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운용하고 있다. 김정식기자

### 인터뷰 시공사 변론 맡은 전선에 변호사

## “건설원가연구원 찾아 수차례 현장검증 설계변경 ‘증거’ 없어도 ‘정황’ 찾아냈죠”



공사시간 내내 발주처 담당자는 단 한건의 문서상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 건설사의 추가 공사비 요청에 대해서요. 일단 공사부터 하면 돈은 주겠다는 ‘말’만 있었죠. 불리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발주처 ‘의의가 분명합니다.’

“공사시간 내내 발주처 담당자는 단 한건의 문서상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 건설사의 추가 공사비 요청에 대해서요. 일단 공사부터 하면 돈은 주겠다는 ‘말’만 있었죠. 불리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발주처 ‘의의가 분명합니다.’

데도 공사시간을 제한한 것이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해줬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었다. 발주처가 추가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비를 지급했고 시공사는 이를 받아버렸다. 게다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서에 날인마저 했다. 판사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정말 추가비용을 들였는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선에(31·사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건설현장에 구두계약과 발주처의 말 바꾸기가 만연한 것에 놀랐다고 했다. 또 법원이 구두계약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데도 여전히 수많은 건설사들이 문서화에 소홀한 것에 두 번 놀랐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 역시 발주처가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비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한 서면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발주처는 교통안전을 이유로 작업시간을 단축시켰다. 줄어든 작업시간과 작업효를 저하, 공사비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사에게 납득시키는 게 중요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전 변호사는 건설원가 연구원을 찾아 수차례 현장을 방문한 끝에 작업시간 작업효를 저하를 ‘수치화’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나온 수치가 객관적 증거가 됐고, 법원은 정식 설계변경이 없었는

그는 “시공사가 기성대금을 수령했어도 그 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다면 추가공사비 요청이 유효하다는 판례를 찾아내 이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시공사가 급한 마음에 공사비를 받긴 했지만, 그전에 수차례 공사비 증액요청 취지의 공문을 공사 책임감리원에게 보낸 사실을 적극 어필한 것이다.

전 변호사는 “‘이의제기 불가 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기성대금도 못 받는 곳이 국내 건설현장”이라며 “건설사들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서류변경과 기성대금 조정신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설사들이 시공과정의 일들을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 발주처의 묵시적 지시나 ‘간접설계변경’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설관련 소송은 아직 개발될 법리가 많다. 그만큼 억울한 건설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억울함이 줄어들수록 건설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기기자

## 【 2016.02.23(화) 건설경제 】

### 건협·건공, 우수대학생 52명에 장학금 1억5300만원 전달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총 1억5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6년 우수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날 지역별, 국공립·사립대별로 안배해 51개 대학 5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상 학생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가운데 건설재해 피해가족, 건설 종사자 가족, 사회취약계층 등을 우대해 해

당학교 총장 추천을 받아 선발했다.

최삼규 건설협회 회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젊은이들이 경제적 문제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2년부터 우수인재의 건설산업 유입 촉진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그동안 총 652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